

#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

##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62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8. .  
제 안 자 : 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이 2025.12.31.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이동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

#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  - 평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
 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, 제5조
- 필요성
  -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사무 :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
- 위탁업무범위 및 운영인력

구 분	내 용
업무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유지</li><li>-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 등</li><li>- 이용신청 접수 및 안내, 홍보에 관한사항</li><li>- 그 밖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항</li></ul>
운영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저상형장애인차량 9대</li><li>- 운전원 10명, 사무원 1명</li></ul>

#### 라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2026. 1. ~ 2028. 12.(3년)

#### 마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,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
- 신청자격
  - 공공기관
   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
    -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
- 선정기준 : 위탁운영 심사평가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
  - 심사내용 : 운영주체 적정성(20), 장애복지사업실적(10), 사업수행 능력(20), 사업계획의 적정성(20), 직원 및 민원해결 방안(30)
- 근로보호 : 기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
- 수탁기관 선정결과 평창군의회 제출

## 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예산 : 720,000천원/연 \*2025년 당초예산 기준 산정
  - 운전원 및 사무원 인건비,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일체
  - 운영차량 및 운영인력 확대 등으로 변경가능
  - 위탁금 지급 및 정산검사 실시

## 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현재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,
- 지도·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공공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아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

-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복권위원회 종합평가 85.04점으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집행 및 예산절감, 사회증진활동,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간 이용자 및 사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.

## 자. 최근 3년간 운영현황

(단위: 대,명,건,천원)

년도	차량대수	등록인원	운영 건 수			수입
			계	관내	관외	
2023	7	607	9,218	8,415	803	21,894
2024	8	744	10,818	9,882	936	23,697
2025.8	9	805	6,779	6,046	733	15,221

## 차. 추진계획

- 민간(재)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: 2025. 9.
- 민간(재)위탁 공고 : 2025 9.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: 2025. 9. ~ 10.
- 협약 체결 : 2025. 10.
- 민간위탁 운영 : 2026. 1.~ 2028. 12.(3년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~⑩ 생략

⑪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⑫ 생략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
제14조의5(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법 제16조 제1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교통약자 이동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~ 5. 생략

6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생략

### □ 평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제12조(이동지원센터) ① 생략

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다.

1. 공공기관

2.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
  3.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
-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지속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요금의 수납을 대행하도록 하고, 그 수납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전(補填)해주어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생략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② 생략

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(이하 “위탁기간”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